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지침

제정 2021. 12. 14. 개정 2023. 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이하 "고시"이라 한다)」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 성능평가 제반 수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6.>

- 1. "성능평가기관"이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2. "평가자"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신청인"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를 의뢰한 기관이나 업체를 말한다.
- 4. "성능평가 기준"이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한 평가항목을 말한다.
- 5. "기술심의위원회"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세부기준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 6.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한다.
- 7. 삭제 <2023.9.26.>
- 8. "확인서 효력유지"이라 함은 성능평가 제품에 경미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술 심의위원회가 확인서 효력을 유지되도록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 9. "CC인증"이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평가 및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10.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정보 보호시스템 등)가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보안기능의 종류, 구현 방식, 강도 등을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 절차)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성능평가기관

제4조(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 성능평가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고시 제16조 제1항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 등) ① 한국인터넷진홍원은 고시 제15조 및 다음 각 호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표 2]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KS Q ISO/IEC 17025 인정요건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 벤치마킹 방법론과 관련한 IETF RFC 2544 및 IETF RFC 3511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에 대해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일 것
 - 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주임평가자 자격 이상을 보유한 평가자 4명 이상을 보유하되 정보보호 제품 네트워크 성능 주임평가자 이상 자격을 보유한 평가자 2명 이상과 보안 성능 주임평가자 이상 자격을 보유한 평가자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개정 2023. 9. 26.>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는 [별표 3]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 (서류·현장) 세부기준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험평가용 제품을 선정하고 시험평가를 하여 다음 각 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수행계획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서 지정요건 불충족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치 요청서/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완조치 요청을 받은 지정신청인은 최대 60일(재조치 요구 3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조치 요청서/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 심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한다.
-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기관 지정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6조(성능평가기관 관리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재지정 등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경우 당해 연도는 실태 점검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 1. 성능평가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 2. 성능평가자 보수교육 이수 등 평가자 자격유지 실태
 - 3. 성능평가 측정 장비의 관리 실태(별지 제2호 서식 성능측정 장비 이력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성능측정 장비 정기점검표(분기별 1회))
 - 4. 기타 성능평가기관 유지에 필요한 사항
- ② 성능평가기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성능평가기관이 외부에 성능평가 관련 문서(신청인 제출물, 평가산출물)를 공개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성능평가기관은 평가자 변동, 대표자 변경, 시험공간 변경 등 평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

-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기관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일정 및 수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평가기관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 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성능평가기관 재지정) ①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고시 제16조 제1항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5조를 준용하여 성능평가기관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성능평가기관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일 이전 1년 내에 1건 이상의 성능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제5조 제3항의 시험평가는 별도 수행하지 않는다.

제3장 평가자 관리

- 제8조(평가자의 구분 및 자격요건) 평가자는 네트워크 성능 평가자와 보안 성능 평가자로 구분하고, 평가자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은 고시 제19조를 따른다.
- 제9조(교육과정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평가자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2회에 한하여 평가자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10조(평가자 자격 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홍원은 평가자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고시 제20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 증명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시 제21조에 따라 수습 이상 평가자의 자격 유효기간 및 유지를 수행한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성능평가기관은 작성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이력카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고시 제22조에 따라 평가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고시 제19조 제3호에 따라 평가자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제4장 성능평가 관리

- 제11조(성능평가 기준 및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시 제8조에 따라 성능평가 기준 및 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성능평가 기준 개발)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신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의 시급성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규 정보보호제품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신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범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시 개선한다.
- 제13조(성능평가 일부 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기관 및 신청인과 협의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성능평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
 - 1. CC인증 받은 정보보호제품을 성능평가 신청할 경우
 - 2. 동일한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커널, 펌웨어 등)가 탑재된 하드웨어 기반 정보보호제품 다수를 동시 성능평가 신청할 경우
- 제14조(성능평가 수행계획서 검토) ①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을 위해 신청인과 협의한 성능평가반 구성, 평가 일정 및 보안 취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성능평가 수행계획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능평가 수행계획서의 다음 각 호를 검토한다.
- 1. 성능평가 신청 구분 및 성능평가반 구성의 타당성
- 2. 성능평가 기간의 적정성
- 3. 성능평가 장소의 적합성(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 시 확인한 시험공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장소)
- 4. 기타 성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제출물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 신청 제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평가착수 전에 성능평가기관 및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성능평가 감독 수행)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평가 업무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 결과 검토를 위해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각 호의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 1.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 및 각 성능평가기관의 기술책임자가 포함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제17조(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한국인터넷진홍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 1. 성능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
 - 2. 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 3. 성능평가기관의 자격 지정·정지·취소 등에 대한 심의
 - 4. 확인서 효력 유지·정지·취소 등에 대한 심의
 - 5. 제33조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 6.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④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의결 및 회의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다.
- ⑦ 간사는 위원회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18조(위원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증 여부를 심의한다.
 - 2. 위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를 유지한다.
 - 3. 위원은 성능평가 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의 수수를 할 수 없다.
 - 4. 위원은 성능평가 결과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5. 위원은 성능평가 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모든 압력을 배제하여야한다.
- ② 위원은 상기 사항 준수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술심의위원 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술심의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다.
- 제19조(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촉할 수 있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위원이 그 사실이 확인되어 해촉된 경우
- 2.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 제20조(위원회의 개최)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 장소, 안건 및

- 기타 관련 사항을 회의 소집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3. 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22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기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서식 제8호의 의안 검토의견서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별지 서식 제8호의 의안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별지 서식 제9호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정보보호제품 성능 평가결과 등에 대한 심의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경우 100일 이내 성능평가기관은 '보류' 판정 사유를 보완한 후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제출하고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성능평가기관이 해당 기간 내에 보완 조치 자료를 한국인터넷진홍원에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위원회는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한다.
- 제23조(보안 조치) 위원은 회의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24조(성능평가 산출물 처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 심의·의결 자료를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으며, 자료 보관·폐기 절차는 원내 기록물관리 규칙을 따른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구 시 성능평가 심의·의결 자료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외부기관 또는 조직 내부의 타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의하에

제한적인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 1. 법에 의한 정당한 자료제공 요청일 경우
- 2. 신청인, 성능평가기관 등 이해당사자가 자료제공을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 3. 성능평가 현황 통계자료 등 특정 신청인 또는 성능평가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자료제공 요청일 경우
- 제25조(수당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홍원의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서면 의결 또는 온라인 심의·의결 시에도 위원회 개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간주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확인서 발급 및 관리

- 제26조(확인서 발급)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 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 ②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 제27조(확인마크 교부)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능평가 제품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의 마크(이하 '확인마크'라 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마크는 신청인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확인마크 사용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교부한다.
 - ②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보유기관(이하 '확인서 보유기관'이라 한다)이 확인마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28조(확인서 재발급)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확인서 보유기관이 별지 제13호 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확인서 보유기관에 확인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 1. 확인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2. 확인서 보유기관이 기관명, 주소,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단, 양수 제외)
- ② 제1항 제2호에 의거 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확인서 보유기관 명칭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기존 확인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점검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확인서 보유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서 재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확인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급된 확인서의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고 확인서 발급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 1. 제품 개요(성능평가 대상 제품명 및 모델명, 제품 유형, 개발사신청인 등)
- 2. 성능평가 개요(성능평가 기준, 성능평가기관 등)
- 3. 확인서 개요(성능평가 확인서 발급번호, 확인서 발급일 등)
- 4.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버전(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 5. 제품개요서(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 제품에 한함)

제7장 사후관리

- 제30조(성능평가 제품 사후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 제품의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확인서 보유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성능평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 2. 성능평가 제품에 보안기능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3. 신규 운영체제의 등장 등 성능평가 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 환경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필요시 성능평가 제품에 대한 새로운 취약성, 성능평가 내용 오·남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기관 및 확인서 보유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 ③ 확인서 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보완해야 하는 경우 확인서 효력유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보완 조치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 제31조(확인서 효력 정지)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거나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오·남용 여부가확인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성능평가 결과확인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확인서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제품에 확인서 효력정지 기간을 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다.
- ③ 확인서 효력이 정지된 확인서 보유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지체없이 확인서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반납하여 정지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2조(확인서 취소)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2. 확인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경우
 - 3. 성능평가 제품이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4. 확인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효력 정지 사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확인서가 취소된 경우, 성능평가 제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확인서 보유기관은 확인서가 취소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하다.
- 제33조(이의 제기) ① 신청인은 성능평가 평가·심의·의결 및 확인서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난, 재해, 질병,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능평가 평가 심의 의결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기타사항

- 제34조(비밀 엄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성능평가 업무 담당자, 기술심의위원, 성능평가기관의 평가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가이드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성능평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성능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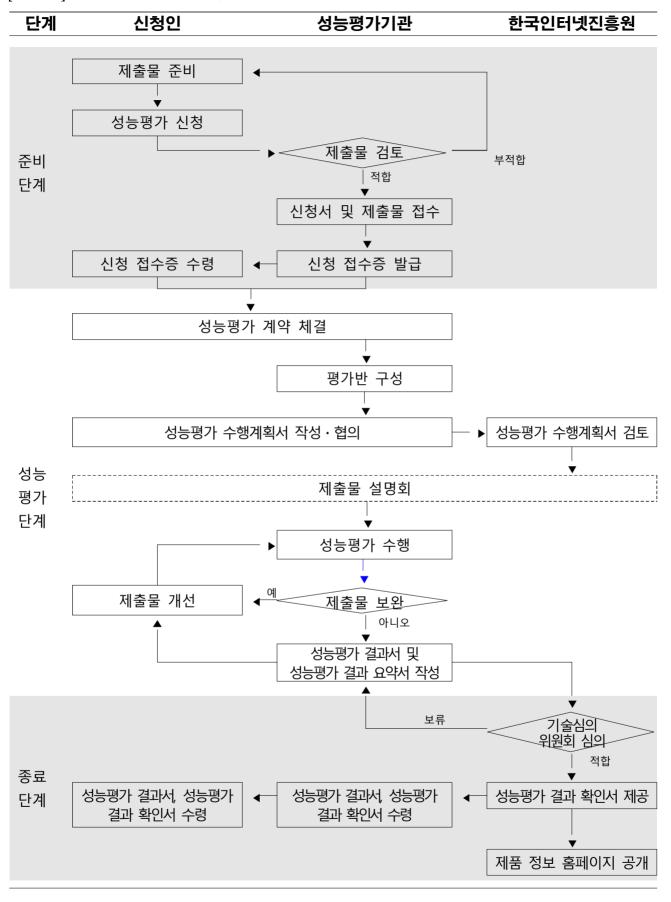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나, 제26조 제2항 단서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반영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 시행 시점부터 적용된다.
- 제2조(숭인 예외) 지침의 별표 또는 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의 경우 별도 승인없이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3, 9, 26,>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절차 <개정 2023. 9. 26.>



[별표 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방법

평가항목	심사항목	심사방법
일반요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사업 범위에 정보보호제품의 시험 및 평가 업무를 포함한 법인일 것 다. 정보보호제품을 생산·개발·유통·판매하는 법인이 아닐 것	서류
조직과 인력	가.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 나.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제3자 기관일 것 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주임평가자 자격을 보유한 평가자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서류
사무 및 시험공간	가. 성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 및 시험공간을 보유할 것 나. 시험공간에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서류 · 현장심사
설비	가. 정보보호제품 분야별 성능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할 것 (예시, 서버,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성능측정 장비, 보안 취약점 점검도구 및 모의해킹 도구 등)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서류 · 현장심사
운영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정보 보호제품 분야별 평가방법 및 시험절차 등을 보유할 것	서류 · 현장심사

[별표 3]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서류·현장) 세부기준

분류	평가항목	심사항목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o 신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일치 및 법인 여부 확인
일반 (서류)	o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사업범위에 정보보호제품의 시험 및 평가업무를 포함한 법인 여부	o 정관에 설립목적 또는 사업범위 내에 정보보호제품 시험 및 평가업무 수행에 관련한 내용 포함 여부 확인 - 정보보호제품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나 IT제품 시험 및 평가 업무 수행 내용 포함도 허용
	o 기관 운용 건전성 여부	o 일반현황, 기관소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추진계획, 기타 추진업무, 기대효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o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3억원 이상일 것 ※ 정부출연,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순수 민간법인만 해당
	o 정보보호제품을 생산·개발·유통·판 매하는 법인 여부	 ○ 정보보호제품을 생산·개발·유통·판매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확인 - 사업자 등록증에 정보보호제품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나 IT제품 표기도 허용 - 단, 온전한 정보보호제품이 아닌 일부 모듈(예, 암호모듈 등)의 개발·유통·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우선 허용하나 향후 성능평가시 자사의 모듈(예, 암호모듈 등)을 탑재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이를 어길시 성능평가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허용
조직 및 인력 (서류)	o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 보유여부	 ○ 국제표준(ISO/IEC 17025)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매뉴얼을 통한 성능평가의 적절성 여부 확인 ※ 인정분야(정보보호시스템 추가기술요건" 혹은 RFC2544 와 RFC3511) 확인 ※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에서 시험기관을 검색하여 인정규격 확인 (https://www.kolas.go.kr) ※ 공인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만료된 신청기관은 해당사항 없음(최소 잔여 유효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 재지정 신청 여부 확인하고 재지정 증빙자료 제출 시점부터 당해년말까지 재지정완료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성능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등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 보유 여부 및 최신 여부 확인
	o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제 3자 기관 여부	 ○ 시험 또는 교정의뢰를 활용하는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판단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 ※ 등기부등본(혹은 사업자등록증) 및 품질매뉴얼(기관 사업목적 및 법적지위 등) 확인 - 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 제품 개발 관련 내용 존재 확인 - 품질매뉴얼 : 제3자 서비스 관련 문구 확인 ○ 방지대책의 합리성 및 적용 가능성과 해당 내용의 관련자 공유 여부 확인

	T	
	o 정보보호제품 성능 평가 경력을 갖추고 평가자 4명 이상 보유 여부	 ○ 주임평가자 자격 보유 인원이 4명 이상인지 확인 ※ 보안성능 2명, 네트워크 성능 2명 이상 ○ 성능평가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성능평가자 자격 유지 기간 내 보수교육 참여 여부 ○ 성능평가자의 신분(예, 정규직/계약직/위촉 등) 확인 ※ 지속적인 시험기관 자격 유지 및 시험 수행을 위한 근무 연속성 보장 권고
사무 및 시험	o 성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 및 시험공간을 보유할 것	 성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 및 사무공간과 성능평가 이외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이 독립되어 있는지 확인 ※ 외부인과 평가자 간 접견 및 회의시설은 시험공간과 분리되어 운영 되어야 함 성능평가 수행 제품별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 시험실 내부에서 파티션 등으로 구획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허용
공간 (서류 ·현장)	o 시험공간에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 보유 여부	o 시험공간 출입문에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시스템, 카드출입시스템, CCTV 등) 설치 및 정상 동작 여부 확인 o 설비 관리대장에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된 사용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확인
설비 (서류 ·현장)	o 정보보호제품 분이별 성능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할 것	 ○ 설비 관리대장에 성능평가에 활용되는 HW 혹은 SW(서버,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성능측정 장비, 보안취약점 점검도구 및 모의해킹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성능평가에 필요한 전산장비(서버, PC, 노트북 등)의 구비 여부 확인 - 성능평가 수행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구비 여부 확인 - 성능평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성능측정 장비 구비 여부 확인※ 성능측정 장비는 소유물에 한정하지 않고 임대라도 무방하며 필요한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당기관의 관리하에 두어야함. 단, 성능측정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 및 기술지원 범위 등이 포함된계약서확인 - 설비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보장하고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유지보수 체결 또는 정기적인 점검 여부확인※ 성능측정 장비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지확인 ※ 성능측정 장비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성능측정 장비의 성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확인
	o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보유 여부	o 설비 관리대장에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o 기록 및 자료의 보관설비의 위치 및 잠금장치 유무 등 확인 o 시험결과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외부망(인터넷망)과 분리된 공유서버 또는 전산시스템(예, 그룹웨어) 존재 여부 확인

o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방법론, 평가절차서 등 관련 서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정보보호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정보보호제품에 한함. 단. 여의치 않은 경우 RFC 2544/RFC3511 또는 설비요건"FA-04-01"의 성능측정 장비의 정기점검을 위한 평가방법론과 평가절차서 등 관련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o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평가방법론, 평가절차서 등 관련 서식의 최신본 보유 여부 확인 o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수행 절차(예, 신청, 접수, 계약, 성능평가 수행, 종료) 마련 여부 확인 <<현장심사>> 0 성능평가자의 성능평가 수행능력 여부 확인 ※ 직원 인터뷰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운영 능력 확인 ※ 시험대상장비(DUT- 방화벽 등 네트워크보안장비)를 대상으로 현장시연 하며, 신청기관의 성능평가 절차서대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결과서를 만드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가~마 항목 운영 o 정보보호제품 분야별 시연 절차 평가방법 및 시험 가. 초당 최대 UDP 처리율 (서류 절차 보유 여부 나. 초당 최대 세션 수 ·현장) 다. 동시 최대 세션 수 라, 초당 최대 트랜잭션 수 마. 최대 대역폭

- 성능평가 수행능력 수준

※ 수행능력 수준이 한 개의 항목이라도 2단계 이하면 추가 보완조치 해야 하며 필요시 재심사할 수 있음(3단계 이상만 적합 판정)

시연 항목	수행능력 수준
시험장비 연결	□ 4단계 □ 3단계 □ 2단계 □1단계
성능측정 장비 환경설정	□ 4단계 □ 3단계 □ 2단계 □1단계
성능값 측정	□ 4단계 □ 3단계 □ 2단계 □1단계
결과 분석 및 도출	□ 4단계 □ 3단계 □ 2단계 □1단계
결과보고서(혹은 성적서)	□ 4단계 □ 3단계 □ 2단계 □1단계

※ 수행능력 수준의 판단 기준

· 1단계 : 해당 시연항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연을 전혀하지 못함

· 2단계 : 해당 시연항목을 일부 이해하고 일부사항만 시연함

· 3단계 : 해당 시연항목을 이해하고 시연할 수 있음

· 4단계 : 해당 시연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연함에 있어서 숙련도가 높음

보완조치 요청서/내역서

기록일자	년 월 일 신청인
41 11 ¬ H	□ 서류심사 □ 현장심사
심사구분	□ 신규 □ 재지정
심사범위	서류/현장심사 00개 항목
보완조치	호 00개 회모
요청개수	총 00개 항목
심사항목	보완조치 요청/내역 내용
	0 _

관리번호 정비명 제조사 제조사 규 격 분야/용도 교정주기 설치일자 설치장소 등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00 社)	성능측정 장비 이력카드					
규 격 분야/용도 교정주기 설치일자 설치장소 특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00 社)	관리번호	장비명				
분야/용도 교정주기 설치일자 설치장소 특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00 社)	구입일자	제조사				
교정주기 설치일자 설치장소 특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00 社)	규 격					
설치일자 설치장소 특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00 社)	분야/용도					
설치장소 특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00 社)	교정주기					
특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00 社)	설치일자					
	설치장소					
	특이사항	※ 임대인 경우 임대표기 및 계약처 (예, 장기임대/ 0	00 社)			
점검 및 수리 이력		일자 내역	서명			

성능측정 장비 정기점검표

관리번호			장비명				
구입일자			제조사				
규 격							
점검주기							
	서버/클라	이언트수	예시) 8개/200개				
점검기준	UDP 처리율(UDP사이즈)		예시) 512	2 바이트		
	예시) 초당 최대세션수(CPS), 동시 최대세션수(CC), 초당 최대트랜잭션수 (TPS), 대역폭 등 측정시 HTTP 응답사이즈 512 바이트						
일자	UDP 처리율	CPS	CC	TPS	최대대역폭	점검자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이력카드

97774 9887X 477							
	소 속				직	위	
사진	생년월일				0	름	
	학 력		최 종 학 력			선 공	
	⊣						
	자격구분	취	득일자(수습)	7	취득일자(주임)	취득일자(선임)
	기 관 명	<u> </u>	근무부서/분여) ‡	기	간	비고
근무경력							
국가기술	기술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일자/유효기간		· 발급기관
자격보유							
교육훈련	교육명		기 간		교육	위기관	비고
(보수교육 등)							
	제품평가 이력						
제 품 명	제품유형		평가 기간		평가지	다 역할	비고
		 성	 능측정 장비 운	 ·영능	 등력		_
위와 같이 성능평가자 이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능평가기관의 장 <i>(서명 또는 인)</i>							

평가기관명-제품군-연도-일련번호

페이지(1)/(총 N)페이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요약서

신청기관명 :		
대표자명 :		
주 소:		

- 1. 제품 유형 : 침입차단시스템
- 2. 개발사명 : *B사*
- 3. 제품명 및 모델명 : 제품명 식별 (예, ABC V1.0)
- 4. 소프트웨어/펌웨어 버전

운영체제:

커 널:

펌웨어:

- 5. 인터페이스(처리율) : 10/100/1000 Base-T*8(1G), 네트워크 보안제품에 한함
- 6. 성능평가 기준 : 침입차단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V1.0
- 7. 성능평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8. 결과 요약서의 용도 :

확인	성능평가자 :	기술책임자 :

- 1. 본 결과 요약서는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외에 사용을 금합니다.
- 2. 본 결과 요약서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결과에 한합니다.

20YY년 MM월 DD일

성능평가기관의 장(서명 또는 인)

성능평가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평가기관명	제품군-연도-일련번호	페이지(2)/(총 N) 페이지
□ 기본 정.	보		
	구분	내용	
	제품유형		
	제품명		
	모델명		
제품식별	커 널		
	펌웨어		
	인터페이스		
	CC인증 여부		
	운영체제		
	CPU		
운영환경	Main Memory		
	Storage		
	NIC		
	신청기관		
71 H 71 H	성능평가기관		
기본정보	성능평가 기준		
	성능평가 기간		
	,	,	
□ 성능측정	당 장비		
성	능측정 장비	내용	비고
1	제품명/모델명		
2 소프트	트웨어(펌웨어) 버전		
3	인터페이스		

평가기관명-제품군-연도-일련번호

페이지(3)/(총N)페이지

□ 제품명의 성능평가 결과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측정지표	단위	시험결과
주요 기능					
일반 성능					
보안 성능					
තුපිර					

□ 종합 의견

- ※ 본 공란은 평가자가 평가에 사용한 기준, 평가항목 등을 서술하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종합적으로 서술
 - 평가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기술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성능평가 신청기관과 작성 내용의 협의 필요함

[작성 예시]

본 제품은 "침입차단시스템 성능평가 절차서 V1.0"에 따라 필수항목 총 X개 중 X개, 선택항목 총 X개중 X개에 대해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수행 결과, 성능평가 기준· 절차를 충족하였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210mm×297mm[백상지(120g/m²)]

기술심의위원 윤리 서약서

	대상	화동·	정보보호제포	성능평가	기술심의위원회	화동
1 1	니 O	글 O ·	ロエエヱ州古	0001	기술 다리되면의	=0

□ 위촉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우리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 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 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 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1.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혈연·지연·학연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 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지겠습니다.
- 1. 우리는 업무상 지득한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하여 공공의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 르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O명 일동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기술심의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7조 및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과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기술심의위원회 의안 검토의견서

의안 번호					
안건 검토결과	적합		보류		부적합
검토	. 항목			검토의견	4
주요기능	구현 여부				
네트워크/시스템 성능					
보인	· 성능				
시간 및 자원의 효율성					

정보보	호제품	품 성능	평가	기술	심의	위원	1 심	의 결	과서	
의안번호										
신청기관명										
개발사명										
평가기관명										
제품구분										
제품명/모델명										
성능평가 심의 구분		〕최초신청	j	<u> </u>	확인서 .	효력 유지	:		재평가	
성능평가 기간			냗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적합			<u>t</u>	보류			부적합	
최종심의 의견										
「정보보호자 합니다.	혜품 성능	평가 업두	- 지침」	에 의:	거하여	상기오	나 같이	심의 결	별과를 저	출
			년	월	잍	<u> </u>				
			위원장					(서민	령 또는 ⁽	인)
							한국인	빈터넷진	흥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개정 2023. 9. 26.>

KISA-제품군-연도-일련번호

페이지(1)/(1) 페이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신청기관명 : 대표자명 : 주 소 :

1. 제품 유형 : 침입차단시스템

2. 개발사명 : *B사*

3. 제품명 및 모델명 : 제품명 식별 (예, ABC V1.0)

4. 소프트웨어/펌웨어 버전 : 소프트웨어명 및/또는 펌웨어명 버전(예. TEST V1.0)

5. 인터페이스(처리율) : 10/100/1000 Base-T*8(1G). 네트워크 보안제품에 한함

6. 성능평가 기준 : 침입차단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V1.0

7. 성능평가기관명 : 성능평가기관명

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 DDoS 대응장비 보안요구사항 V1.0(해당 시)

9. 유효기간 : YYYYY.MM.DD~YYYY.MM.DD

위 제품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YY년 MM월 DD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별지 제10-1호 서식] 삭제 <2023. 9. 26.>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의 마크(확인마크)

1. 확인마크 도안



- 2. 발급번호는 다음과 같다. KISA-제품군-발급연도-일련번호
- 3. 성능평가 마크는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또는 품질보증서 등에 부 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 용할 수 있다.
- 4. 확인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서 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확인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확인마크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기관명		구분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주 소					
신청인	대표자		사업자번호			
	담당자		전 화: 이메일:			
	제품군					
성능평가	제품명					
제품	소프트웨어 정보					
	확인서 발급번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확인마크 사용을 신청 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표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담당자		전 화: 이메일:
	재발급신청사유	사유별 발생일자	사유별 세부내용
	□ 분실 또는 훼손		
재발급 사유	□ 보유기관명·대표자· 주소 변경		
	□ 제품 변경(효력유지)		
	□ 기타		
성능평가 제품	확인서 발급번호		
	제품명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표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담당자		전 화: 이메일:			
	재발급신청사유	사유별 발생일자	사유별 세부내용			
	□ 분실 또는 훼손					
재발급 사유	□ 보유기관명 변경					
	□ 제품 변경(효력유지)					
	□ 기타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번호					
제품 	제품명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	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또는 중질지(80g/m²)]

확인서 효력유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기관명		구분	□ 제조자 □ 판매자 □ 수입자				
	주 소							
신청인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 화:					
	담당자		이메일:					
			olenie:					
	제품군							
	제품명							
성능평가 제품	소프트웨어 정보							
	확인서 발급번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효력유지를 신청합니다.

년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능평가기관의 장

귀하

이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표자		
시카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담당자		전 화: 이메일:
제 품 명			
(모 델 명)			
사유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